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4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덕렬 엔지니어링플랜트팀장, 이창원 사무관(2110-4696)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 본격 시행키로..!

- 건설.전력 2개 분야에서 전체 15개 기술부문으로 확대 -

-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 강화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적 위험에 따른 사업자 도산 방지 및 피해자 적정 보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기존의 **2개 부문에서 엔지니어링 산업 15개 全 산업부문**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법률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10.4), 시행령('11.1), 시행규칙 ('11.1)

- 금번에 동 제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가입금액 산출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음.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확대 현황〉

구 분	현 재	변 경
기술 부문	○엔지니어링 2개 부문 (건설 및 전기·전자)	○엔지니어링 15개 全부문 (기계, 화학, 금속, 응용이학, 환경, 통산정보처리, 항공우주, 섬유, 농림, 선박, 해양수산, 광업자원, 산업관리, 전가전자, 건설)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동 제도는 건설·전력부문 이외의 **15대 全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공제료를 사업대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으로 함.

< 종류별 가입기간과 증서 제출시기>

보험 또는 공제 종류	가입기간	증서제출시기
①**설계** 보험 또는 공제 ②**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 ③**계약** 보험 또는 공제 ④**구매**(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⑤**감리** 보험 또는 공제 ⑥**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보험 또는 공제 ⑦**유지**(보수, 관리)보험 또는 공제 ⑧**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동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국내 시중 손해보험회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배상책임공제 제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4월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또는 공제 상품"를 본격 출시**할 예정임.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책임제도 연구 용역 : 보험개발원, '09.12~'11.1.

< 참고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개요

[참 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공제 의무가입제도 개요

1.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 엔지니어링사업은 책임한계가 광범위하고 대다수 사업자가 중·소업체인 산업구조상 제도적인 측면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의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건설·전력부문 이외의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보험·공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 공공부문 전체 엔지니어링사업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제도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 개선

○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인 피해자 보호 강화,**

2. 엔지니어링사업자와 발주청의 의무

구분	의 무
엔지니어링사업자	발주청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를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발주청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계상(計上),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의 업무요령 준수여부를 검토

3. 의무가입대상

구분	해당 조건
의무가입대상 사업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의무가입대상 엔지니어링활동	연구, 기획, 메뉴얼 작성, 자문, 지도를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활동

4. 가입금액(보상한도액)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제외한 금액으로 함 (순계약금액)

※ 발주청은 계약금액 증감 시 사업자로부터 순계약금액 만큼 증액 또는 감액함.
(단, 증감된 순계약금액은 당초 가입금액의 10%이내 적용 배제)

5. 가입기간 및 제출시기

보험 종류	가입기간	증서제출시기
①**설계** 보험 또는 공제 ②**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 ③**계약** 보험 또는 공제 ④**구매**(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⑤**감리** 보험 또는 공제 ⑥**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보험 또는 공제 ⑦**유지**(보수, 관리)보험 또는 공제 ⑧**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단,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6. 공제료 산정

산정방법	-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 - 발주청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로 산출, * 보험요율 : 시중 손해보험회사(금융위원회 신고), 공제조합(지경부 사전 협의)

< 보험·공제 요율산출 및 적용 절차 >

보험·공제 요율 산출 연구 ➡ **보험·공제 요율(안) 마련** ➡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개발원)의 협의 절차** ➡ **보험·공제 요율 확정 및 적용**

- 보험·공제 요율 산출 연구: ■ 보험요율산출기관, 공제조합 등 요율 산출 연구
- 보험·공제 요율(안) 마련: ■ 보험요율산출기관, 공제조합 등 요율(안) 확정
-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개발원)의 협의 절차: ■ 금융감독기관 신고(승인) ■ 지경부 사전협의
- 공제조합의 협의 절차: ■ 지경부 사전협의

7. 가입 및 보상절차

□ 가입절차

손해배상보험·공제 청약 ➔ **심 사** ➔ **증권 발급** ➔ **보험·공제료 납부**

□ 보상절차

공제금 청구 ➔ **사고접수** ➔ **현장조사** ↓ **지급공제금 결정** ➔ **공제금 지급** ➔ **보상완료**